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46호 2020. 12. 15.(화)

선	기관의 장
람	

【조 례】

제1378호 공주시 시민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제1379호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제1380호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1381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1382호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지원 조례	27
제1383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1384호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1385호 공주시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제1386호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45
제1387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1388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138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규 칙】

제588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60
--------------------------	----

【공 고】

제2020-2544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9
제2020-2547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5

【고 시】

제2020-22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01
제2020-2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04
제2020-225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210
제2020-22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13
제2020-227호 금학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215
제2020-228호 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6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최,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기능)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mbudsman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ombudsman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주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ombudsman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6. 시장 및 시의회에 ombudsman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원조사 시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ombudsman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9.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옴부즈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옴부즈만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 5일 이내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은 제3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발·추천을 위하여 공주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오부즈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오부즈만에게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오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오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오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을 통해서 신고 된 경우
5.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③ ombudsman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ombudsman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 및 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ombudsman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 ombudsman은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도 및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시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서 정한 직무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9. 그 밖에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8조(합의의 권고) ombudsman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ombudsman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부여) ① ombudsman은 제19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 전에 해당 소속기관 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ombudsman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19조에 따른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등의 장의 통보를 받은 ombudsman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④ ombudsman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의뢰)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ombudsman은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ombudsman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내용이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6조(국민권익위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지원

제27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79호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計器)(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공주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보관) 시에서 충청남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이를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각 부서장은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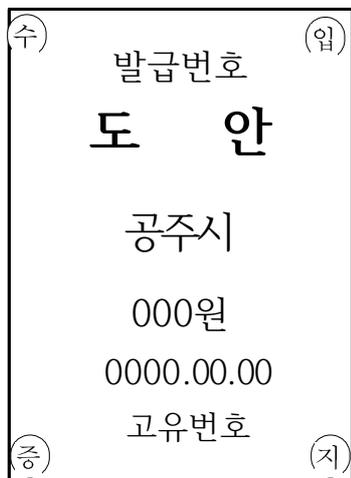
[별표]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5조 제1항 관련)

가. 규격 : 가로 2.7cm, 세로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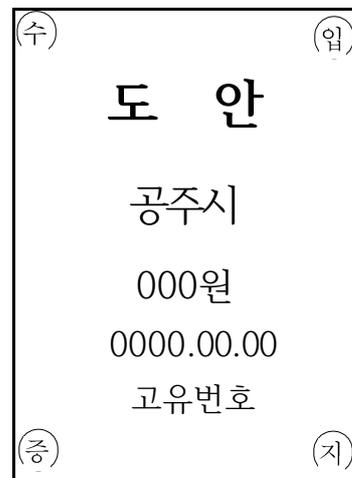
나. 모양 :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도안

■ 전자수입증지



※ 인영색상 : 녹색

■ 무인민원발급기 등



※ 인영색상 : 검은색

[별지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담당자	팀 장	부서장	결 재

- 발행일:
- 계기 고유번호:

발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발 행 액(수입)						결손액	
	계(A+B)		현금(A)		카드(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일합계								
전일누계								
총 누계								

- ※ 발행액은 결손액을 제외한 실제 발행금액 / 결손은 증빙자료 별도첨부
- ※ 전산출력물로 대체가능

수입금 불입내역

(단위 : 원)

과목	금일 불입액				불입액 누계	
	금일수입		카드대금수입 (C)	금일불입액 (D=A+C)	전일까지 불입액(E)	금일까지 불입액(D+E)
	현금(A)	카드(B)				
증지수입						

- ※ 카드대금수입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81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주시 충남연정국원”, “국악원”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국악단”
으로 하고, 2호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3조 중 “국악원” 및 각 호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제4조 중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항 1호, 제9항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의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하고, 제3항의 “예술감독”을 “상임지휘자”로 한다.

제6조 제1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전형위원회”로 하고, 제1항 각 호의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제2항 “국악원”, “원장”을 “국악단”,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비상임원장”을 “비상임예술감독”으로 한다.

제9조제1항6호,9호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 “원장”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전형위원회”,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u>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u>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u>----- ----- -----.</p>
<p>제2조(구성) <u>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u>(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p> <p>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u>국악원</u>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p> <p>2. 위촉직 : <u>원장·악장·상임단원·비상임단원·운영요원</u>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구성) <u>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u>(이하“국악단”이라 한다) ---- ----- -----.</p> <p>1.----- ----- <u>국악단</u> ----- -----.</p> <p>2.----<u>예술감독</u>----- ----- ----- -----.</p>
<p>제3조(운영계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국악원</u>의</p>	<p>제3조(운영계획) ----- -----<u>국악단</u>의 -----.</p>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국악원의 활동 계획
2. 국악원의 운영 및 기본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제3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략)
-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악원관련업무 국장이 된다.
- ④ (생략)
 1.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
 2. ~ 4. (생략)
- ⑤ ~ ⑧ (생략)
-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악원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단장은 국악원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원장·악장·수석단원·차석단원·일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1. 국악단 -----
2. 국악단 -----
3. ----- 국악단-----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국악단--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운영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국악단-----
--.
- ④ (현행과 같음)
 1. 국악단 -----
 2. ~ 4. (현행과 같음)
 - ⑤ ~ ⑧ (현행과 같음)
 - ⑨ -----

----- 국악단-----.

제5조(직무) ① ----- 국악단--
-----.

- ② -----
-----예술감독-----

한다) 및 운영요원을 지도 감독한다.

③ 원장은 예술감독을 겸임하며, 국악원 공연과 강습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등과 운영요원의 관리·감독을 수행 한다.

④ 악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생략)

⑥ 운영요원은 국악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⑦ (생략)

제6조(위촉) ① 단원등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

1. 원장 :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 능력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략)

3. 비상임단원 : 국악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비상임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③ 예술감독---상임 지휘자-----
-, 국악단 -----
-----.

④ --- 예술감독 -----, 예술감독 -----

-----.

⑤ (현행과 같음)

⑥ ----- 국악단-----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위촉) ①-----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 -----
-----.

1. 예술감독 : -----

2. (현행과 같음)

3. -----
-----예술감독-----

② --- 국악단 -----
-----예술감독 -----
-----.

제7조 (생 략)

제8조(임기) ① (생 략)

②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정기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비상임원장의 정년은 만 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④ (생 략).

제9조(위촉해제 등) ① (생 략)

- 1. ~ 5. (생 략)
- 6. 국악원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 7. ~ 8. (생 략)
- 9. 그 밖에 국악원 발전에 해를 끼쳐 행동하는 사람

② ~ ③ (생 략)

제10조(전형위원회)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와 위촉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악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예술감독 -----

③ -----

--, 비상임예술감독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촉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 6. 국악단 -----

- 7. ~ 8. (현행과 같음)
- 9.---- 국악단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형위원회) ①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전형위원회-----

② -----

에서 단장이 위촉 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전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 ~ 제16조 (생략)

제17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생략)

-----,-----
-----예술감독-----

-----.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11조 ~ 제16조 (현행과 동일)

제17조(경비 지원) ----- 국악단-----

-----.

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동일)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82호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재단의 필요한 사업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83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10조제4항 중 “7일 까지”를 “7일까지”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변지역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변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해당 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기존 대지 및 인접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일부 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포함)에서 기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개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 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일 부 제한구역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의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이하 지역 - 소, 젓소 : 1,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500m 이하 지역 </div> </div>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개정 후)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 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제한 구역 이외의 구역	<div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도시 및 주거밀집 지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의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이하 지역 - 소, 젓소 : 1,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500m 이하 지역
	지방자치 단체 경계지역	<div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지방자치 단체 경계지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하 지역 - 소, 젓소,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600m 이하 지역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과 같 과 같다.</p> <p>가. (생 략)</p> <p>나. 「<u>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u>」제2 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 하지 않는다.(전기·수도시설 이 사용 불가능한 가구)</p> <p>다.·라. (생 략)</p> <p>8.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농어촌정비법</u>」 제2조----- ----- -----</p> <p>다.·라. (현행과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p>9. “<u>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u>”이란 <u>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 체간 경계지역을 말한다.</u></p>
<p>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 리수수료 등) ① ~ ③ (생 략)</p> <p>④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수수료 를 시장이 발급한 세외수입납부고 지 서로 다음 달 <u>7일</u> 까지 납부하 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 리수수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p> <p>④ ----- ----- ----- <u>7일까지</u> ----- -----</p> <p>제13조(주변지역의 지원 등) ① 시장</p>

제13조 · 제14조 (생략)

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변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해당 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84호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u>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u>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사업장</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u>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u>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 <u>사업장</u>-----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에 <u>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u>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4조(특례보증) ① ----- <u>사업장</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85호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주시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공주시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충전·판매 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 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 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대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 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 및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상품권의 위·변조와 부정발행 예방을 위해 안전한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대행하는 경우 운영 수수료 등 그 대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 등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형 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카드형 상품권

3. 전자형 상품권(모바일 형식 포함)

② 상품권의 디자인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공주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약등을 통하여 유통지역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판매·회수·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 변경,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⑧ 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훼손된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소유자)의 과실여부와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②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훼손 등의 사유로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의 모집 및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가맹점 신청서, 가맹점 변경신청서, 가맹점 해지 신청서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요건은 공주시 관할 구역

내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소이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의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다.

⑦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매출증대 및 홍보를 위해 자체 특별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5%(출시기념,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등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영리법인의 경우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 단체 등이 수당 등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는 구매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다음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1. 전통시장 가맹점 10%
2. 로컬푸드·친환경 가맹점 7%
3. 그 밖의 가맹점 5%

제14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대행점, 가맹점에 출입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환수 조치)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 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86호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공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시 소속 근로자
2.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한시적 고용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9월 20일 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상황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말일 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월(月) 단위로 정한다.

⑤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심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관련분야 국장과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 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인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을 일시납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익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익계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1호의 비영리 법인을 제외한 법인 및 그 밖에 경우	경쟁입찰	낙찰가격	일시납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생략)

<서식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수익계약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을 일시납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88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u>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② -----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p>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38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리 등) ①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1일”을 “한옥마을의 1일”로, “14:00”을 “15:00”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시설사용료), 별표2(시설사용료 감면기준), 별표3(시설사용료 환급기준)】

현행			개정안		
[별표 1]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 시설사용료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구 분	감 면 율	
	단 체 숙박동	개 별 숙박동		단 체 숙박동	개 별 숙박동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 센트	20퍼센트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 센트	20퍼센트
2. 수학 여행단(기관·단체 공문접수 시)	20퍼 센트		2. 수학 여행단(기관·단체 공문접수 시)	20퍼 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기관·단체 공문접수 시)	20퍼 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기관·단체 공문접수 시)	20퍼 센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퍼 센트	20퍼센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퍼 센트	2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퍼 센트	2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퍼 센트	20퍼센트
6.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 센트	20퍼센트	6.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 센트	20퍼센트
7. 「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20퍼 센트	20퍼센트	7. 「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20퍼 센트	20퍼센트
8.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 퍼센트	20퍼센트	8.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 퍼센트	20퍼센트
9. 「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 관광시설 공동 이용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부여군·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 센트	20퍼센트	9. 「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 관광시설 공동 이용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부여군·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 센트	20퍼센트
10.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 센트	20퍼센트	10.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 센트	20퍼센트
11.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 센트	20퍼센트	11. 「공주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 센트	20퍼센트
			12. 수탁자가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시	20퍼 센트	20퍼센트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②·③ (생략)

제6조 ~ 제8조 (생략)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10조(양도금지) 제6조-----

-----.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제6조-----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

공주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 11. 26.)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588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를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집회날”을 “집회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명시”를 “기재”로, “제출하며 긴급을 요할시는 구두로 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해당위원”을 “해당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출석 요구”를 “제5항의 출석요구”로 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없을때”를 “없을 경우”로, “함으로써”를 “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때에는 의장이”를 “경우에는 의장의”로, “각 항”을 “각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장·부의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원총선거”를 “총선거”로, “의장·부의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날로부터 개시하여”를 “날부터”로, “날까지”를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부의장”을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남은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3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부터 계산
한다**”를 “**날로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를 “**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4조에 따른**”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3조 제1항**”을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으로, “**때에는유회**”를 “**때에는 유회**”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긴급하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
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긴급한 경우에는**”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으로 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 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인정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의시”를 “동의”로, “하며”를 “하며,”로, “대해서”를 “대하여”로 한다.

제19조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발의 하며”를 “발의하며”로, “한정한다”를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로, “없으면”을 “없는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를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부할수”를 “회부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를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로, “회부하되”를 “회부하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동의자”를 “동의자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4분의1”을 “4분의 1”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 발의자”를 “때는 발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회하고자할”을 “철회하고자 할”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위원회의 경우에는”을 “위원회에 있어서는”으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발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본 회의에”를 “본회의에”로, “없으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 회의의”를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심의하는 경우에는”을 “심의함에 있어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위원회”를 “다만, 위원회”로, “대해서는”을 “대하여”로, “표결 하되”를 “표결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지설명”을 “취지 설명”으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인정하면”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불일치하는”을 “저촉되는”으로, “그 밖에”를 “기타의”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각각 “때에는”으로 한다.

제35조 중 “따라”를 “의하여”로, “못할”을 “못한”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의제외이거”를 “의제외에 미치거”로, “반해”를 “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반한다고”를 “위반된다고”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위원장·발의자”를 “위원장, 발의자”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질의·의사진행발언”을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은 20분, 다른 의원은 10분”을 “10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해서”를 “대하여”로, “범위”를 “범위 안”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있은후”를 “있은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장이”를 “의장의”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러 개”를 “수개”로, “따라”를 “의하여”로 한다.
제5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한다.

7. 제반보고사항

제51조제1항 본문 중 “회의록은”을 “회의록에는”으로, “서명 날인한다”를 “서명·날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명날인한다”를 “서명·날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발간및보존 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본 회의의 의결 또는 의회운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를 “본회의의 의결로”로 한다.

제53조제1항 후단 중 “안녕 질서”를 “안녕질서유지”로,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 위원회”를 “발언자”로, “기재”를 “게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기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거절해”를 “거절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를 “의하여”로, “전재·복사해”를 “전재·복사하게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5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한”을 “인정한”으로, “본회의중”을 “본회의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각각 “때에는”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9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4조제1항 중 “결과”를 “결과,”로, “사항을 서면”을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의제가된”을 “의제가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충보고”를 “보충보고”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심사 감사”를 “심사·감사”로,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예산과 결산 등 심사”를 “예산안과 결산심사”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예산안 등 심의)”를 “(예산안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장은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이 제출되면”을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으로, “심사기간”을 “의장은 의 심사기간”으로, “끝나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를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한다.

제71조 중 “한정하여”를 “한하여”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5장에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3조제1항 후단 중 “서면으로”를 “서면으로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질문요지서”를 “질문요지서”로, “하며”를 “하며,”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시장에게”를 “의원이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날부터 7일”을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시장 등의 발언)”을 “(시장의 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할때”를 “할 때”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서명 날인”을 “서명·날인”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로, “부분”을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사고에 따라 기일내”를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라”를 “의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심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중 “경우에는 일정”을 “때에는 일정”으로, “있으며”를 “있으며,”로, “경우에는 의장은”을 “때에는 의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호 중 “행위”를 “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장시키거”를 “지연시키거”로, “그 밖의”를 “기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한다.

제82조 중 “의원·관계공무원·그 밖에”를 “의원·관계공무원·기타”로, “사람 외”

를 “자 외”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을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의장이”를 “의장의”로, “발급한다”를 “교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의”를 “기타”로, “따라”를 “의하여”로, “인정하면”을 “인정할 때에”로, “발급한다”를 “교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은”을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기가”를 “술기운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7조제1호 중 “회의장안”을 “회의장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한다.

제88조제2항 본문 중 “녹음등”을 “녹음 등”으로, “사람은 매 회기초”를 “자는 매회기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의 경우에는”을 “위원회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8장에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 질문 현황

6. 기타 의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9조제2항 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에 따른”을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2조제2항 중 “관한”을 “관”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 71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신 설></p> <p>제4조(개회식)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날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를 하는 경우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를 하는 경우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p>	<p>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 71조 등의 규정에 ----- ----- ----- -.</p> <p>제3조(의석배정) ① ----- - <u>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u> --- --. <u>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u></p> <p>② <u>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u></p> <p>제4조(개회식) ----- ---<u>집회일에</u> . ----- ---<u>총선거 후</u>----- ----- ----- -----.</p>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며 긴급을 요할시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신설>

④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 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 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

<신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 기재-----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

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

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

한 것으로 본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해당의원-----.

⑥ 제5항의 출석요구-----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

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 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이 선거가 끝난 후 전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신 설>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

----- 없을 경우 -----

----- 하여 -----
-----.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 제>

⑤ -----
경우에는 의장의 -----
각항-----.

<삭 제>

제8조의3(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11.10.18.)

<신 설>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
 -. ----- 총선거 -----
 -- 의장과 부의장-----
 날부터 ----- 날-----.

② ----- 의장 또는 부의장----- 잔임기간은-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 (결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신 설>

제11조(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
를 대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
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중 최
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
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회기) ① (생 략)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생 략)

제1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
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
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
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
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삭 제>

제1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집회 후 -----
-----.

③ ----- 날로부터 계산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개의) -----

----- 그 -----
-----.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
----- 때까지 지방자
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3조제
1항-----

에는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의2(회의의 공개 등)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10.18.)

제16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신설>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생략)

--- 때에는 유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제1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시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
---- 1 이상-----

----- 인정할 때에는 -----

-----.
----- 동의-----
----- 하며, ----- 대하여-----
-----.

제1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 때에는 -----
-----.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생략)

②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한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 발의하며, -----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때에는 -----

-----.
-----.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입법예고 -----
----- 없는
한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조례」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1.10.18.)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
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
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
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3조(심사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
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
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
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동회의 의제성립) 본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의
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
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
-----.

회부할 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한 때-----
----- 회부하되, -----
-----.
-----.

제23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때에는 -----
-----.
-----.

제25조(동회의 의제성립) -----

동의를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의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번안) 번안동의를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

----- 동의자외 -----
-----.

제26조(수정동의) ① -----

----- 4분의 1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
----- 때는
발의자 -----

-----.

② -----

----- 철회하고자 할 -----
-----.

제28조(번안) -----

----- 위원회에 있어서는 -----
----- 발의한다. -----
----- 본회

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 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안건심의) ① 본 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재회부) 본 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정리) 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을 후 서로 불일치하는

의에 -----
-----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
-----.

제29조(안건심의) ① -----
-- 심의함에 있어서 -----

----- 다만, 위원회-----
----- 대하여 -----

- 표결하되, -----
-----.

② -----
취지 설명-----
때에는 관계 공무원-----
-----.

③ ----- 인정할 경우에는
는 -----
-----.

제30조(재회부) 본회의-----
----- 인
정할 때에는 -----

-----.

제31조(의안의 정리) -----
----- 저촉되는 -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 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 기타의 -----

-----.

제34조(발언의 장소) ① -----

----- 때에는 -----
-----.

② ----- 때에는 -----

-----.

제35조(발언의 계속) -----
----- 의하여 -----

----- 못한 -----

-----.

제3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 의제외에 미치거나 -----
----- 반하여 -----.

② -----
----- 위반된다고 -----

-----.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

-----.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은 20분, 다른 의원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개정 2014.10.29.)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토론의 통지)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 위원장, 발의자 -----

----- 때에는 -----
-----.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

-. -----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 10분-----

② -----
----- 대하여-----
----- 범위 안-----
-----.

제40조(토론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후단 삭제>

<삭제>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토론·축조심을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표결의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6조(표결방법) ① (생략)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④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② ----- 있은 후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43조(표결의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때에는 --

-----.

제46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의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

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
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한 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6. (생략)

7. 모든 보고사항

8. ~ 13. (생략)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원본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며, 그 밖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 수개 -----

- 의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반보고사항

8. ~ 13. (현행과 같음)

14. 기타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

----- 서명
· 날인한다. -----
----- 서명·날인한다.

② -----
----- 한다.

에 자세한 사항은「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생략)
-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의 의결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

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때에는 -----
----- 본회의의 의결로 -----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안녕질서유지-----

---- 발언자-----

----- 기재-----.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 때에는 -----
----- 거절
하여-----.

③ ----- 의하여 -----
----- 전
재·복사하게 하여-----.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④ -----
-----.

----- 때에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

----- 인정한 -----
----- 본회의 중-----<단서 삭제>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 때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때에는 -----
-----.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

제64조(심사보고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

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4조(심사보고의 제출) ① -----

----- 결과, ----- 사항
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쇄
물 또는 전자문서로 -----.
-- 때에는 -----.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 -----

----- 의제가된 -----

-----.

② -----
----- 보충보고-----
-----.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

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과 결산 등 심사

제68조(예산안 등 심의) 의장은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이 제출되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결산 등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서(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

대출금지) -----
----- 기타 -----
----- 심
사·감사 ----- 없는
한 -----
-----.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8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

-----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

-----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 한하여 -----

-----.

제72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73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 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3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

----- 서면으로 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5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때에는 -----

-----.

④ -----

----- 질문 요지서----- 하며, --

-----.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

-----.

② ----- 날로부터 10일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시장의 발언) -----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6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따라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 할 때-----
-----.

제76조(사직) ① -----
----- 서명·날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
----- 부분-----
-----.

② -----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
----- 때에
는 -----
-----.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때에는 -----
-----.

② -----
--- 의하여 -----
----- 때에
는 -----
-.

③·④ (생략)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생략)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받아 이에 출석·발언할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제80조(경호) ①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연장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③·④ (현행과 같음)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경호) ① -----
----- 때에는 일정-----

- 있으며, -----
- 때에는 의장이 -----

----- .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

----- .
1. -----

연동
2. ----- 지연시키거-----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 5. (생략)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생략)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이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기타 -----

3.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 의원·관계공무원·기타 -----

----- 자 외-----.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 의장의 -----
----- 교부한다.

② ----- 기타 -----
----- 의하여 -----
----- 인정할 때에 -----
----- 교부한다.

③ -----

-----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주기가 있는 사람

<신설>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③ (생략)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 7. (생략)
-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8조(녹음·녹화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 1. (현행과 같음)
- 2. 술기운이 -----
-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 1. 회의장 안-----
- 2. ~ 7. (현행과 같음)
- 8. 기타 -----

제88조(녹음·녹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녹음 등-----
 자는 매회기초-----

 ---. ----- 위원회에 있어서는 -----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 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 질문 현황
6. 기타 의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③ -----

-----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 (생략)

② 의원을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의2(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

-----.

<삭제>

공주시 공고 제2020-2544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시 공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일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사업장을 둔’으로 개정 필요
- 최근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일부 개정[안 제1조, 제2조]
 -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일원화 함.
-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명칭 및 지원 구체화[안 제8조의 제2항, 제3항]
 -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을 일부 개정

-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해당 되는 사업의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수 있다.

○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조건 일부 개정[안 제12조의 5호]

-“사업장 또는 주소”를 “사업장”으로 개정

○ 영어식, 일본어식 불필요한 표현 삭제[안 제13조의 제2항]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0. 12. 15. ~ 2021. 1. 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시장경제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296 FAX : 041-840-2323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 041-840-8296)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3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업의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5호 중 “사업장 또는 주소를”을 “사업장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u>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사업장</u>----- ----- ----- ----- -----.</p>
<p>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u>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4조(적용 범위) ----- <u>사업장</u>----- ----- -----.</p>
<p>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생략) ② <u>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u>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u></p>	<p>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u>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해</u></p>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2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생략)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당되는 사업의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장을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

-----.

공주시 공고 제2020-2547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 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20.9.1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근무성적평정의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을 인사규칙으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반영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안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4)
 - 방재기사 자격증이 신설되어 방재기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4개 직류에 방재기사 자격증 규정
 - 생물공학 기사 명칭 변경 반영 (생물공학·바이오화학제품제조)
 -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명칭 변경 반영 (기계가공조립·기계조립)

- 방재안전직렬 경쟁임용 가산대상 자격 요건 개정(안 별표5의2. 별표7의4.)
 - 방재안전직렬에 토목, 건축 등 실제 업무 유관 분야 자격증을 신설
- 데이터 직류 신설 및 운수직류 및 경비직류 등 활용도가 낮은 직류는 통폐합 (안 별표4)
- 방재안전연구직렬 경력경쟁임용·가산대상 자격 요건 신설 등(안 별표2. 별표6. 별표7의4. 별표11.)
 - 방재안전연구직렬 전공분야, 자격증 신설
 - 잠업근충 직류 명칭 변경 반영 (잠업근충·산업근충)
-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안 7조제3항)
 - 보호대상자 용어를 지원대상자로 명칭 변경
- 기타 미비사항 보완 개선(안 제15조, 제26조의1)
 -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개선내용 중 오류사항 수정
 - 공무원임용령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

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항 규정

- 자격증 가산점 폐지 및 가산점 평정 조문 신설(안 제35조)
 - 직무와 관련성 없이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는 자격증 가산점 폐지
 -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평정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과 실적가산점의 부여요건 및 가산점을 규정함

★ 가산점 평정제도 개편 요약내용

분 야		가점대상	부여기준 및 요건	가점 (반영방법)
자격증 등	현 행	자격증 등	- 자격증 종류 등 별표15.~별표16. 규정	0.25~0.5점/최대0.75 (정기평정 마다)
	개 편	-	(폐지)	
특수지 근무	현 행	도서· 벽지근무자	- 공주시 관내 도서 벽지 없음	최대 0.75점 (경력평정 기간)
	개 편	-	(해당없음)	-

분 야		가점대상	부여기준 및 요건	가점 (반영방법)
인사 교류	현 행	계획교류자	- 교류 1년 경과 후 최초 임용일부터 가점	월0.1점/최대 2.4점 (승진할 때 까지)
	개 편	계획교류자, 파견자	- 교류 및 파견 1년 경과 후 최초 임용일부터 가점	교류 월0.05점/최대 1.2점 파견 월0.025점/최대 0.6점 (*경력평정 기간)
특정 업무	현 행	사회복지, 재난·안전	- 복지업무(복지수당 수령자) 및 재난 관련법 담당 업무,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월0.05점/최대 0.75점 (*경력평정 기간)
	개 편	사회복지, 재난·안전관 리, 인허가 등 기피 업무	- 기피·격무 담당 업무, 1년 6월 경과 후 최 초 임용일부터 가점 <기피·격무 업무 지정> ·복지정책과 2명 / 기초생활자활근로 업무 ·경로장애인과 1명 / 장사업무 ·여성가족과 2명 / 어린이집 인가, 보조금업무 ·시민안전과 / 재난업무 ·허가과 / 인허가업무 ·지역경제과 1명 / 개별공장승인업무 ·보건과 / 감염병 대응업무 ·축산과 / 가축방역 업무	월0.03점/최대 1점 (*경력평정 기간)
전문 직위	개 정	의무사항임 <개편대상>	- 전문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3년 초과 4년 이하 : 월0.1점 ·4년 초과 5년 이하 : 월0.12점 ·5년 초과 : 월0.15점	최대 5점 (*경력평정 기간)
실적 가산점	현 행	중앙시책	- 중앙행정기관 주관·평가 수상(0.2~0.5점)	최대 3점 (5급 3년, 6·7급 2년, 8·9급 1년 동일비율로 반영)
		포상 등	- 정부포상(0.3~1점), 모범공무원(0.3점)	
		적극행정우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0.5점)	
	개 편	중앙시책	- 중앙행정기관 주관·평가 수상(0.2~0.5점)	최대 3점 (5급 3년, 6·7급 2년, 8·9급 1년 동일비율로 반영)
		포상 등	- 정부포상(0.3~1점), 모범공무원(0.3~0.5점)	
		적극행정우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0.5점) ·시군위임(정성)평가 및 기업유치 실적포함(신설)	
		(신설)협업행정	- 주관부서 0.3~0.5점 / 협업부서 0.1~0.3점	
		(신설)공모사업	- (공모횟수) 1회(0.1점), 2회(0.2점) 3회 이상(0.3점) - (선정결과) 3억~5억(0.1점), 5억~10억(0.3점), 10억 이상(0.5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041-840-2068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 041-840-2068)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307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최종시험예정일 부터”를 “최종시험예정일부터”로 한다.

제14조의3제4항 중 “4할이상”을 “4할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전단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의1을 제2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6조의1)의 제목 “의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 방법)”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5급이상)”을 “(5급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급이상)”을 “(7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도사(연구직 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를 “지도사”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훈련 파견자는 제외한다.

1.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자 : 1개월 마다 0.05점(최대 1.2점)
2.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파견자 : 1개월 마다 0.025점(최대0.6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의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최초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3점을 부여하되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다른 직위에 임용되어 가산점을 받는 경우 1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재난대응팀 재난 팀장 및 담당자
2.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기초생활 및 자활근로 담당자 (2명)
3.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장사 담당자 (1명)
4. 여성가족과 보육팀 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담당자 (2명)
5. 경제과 산업단지팀 개별공장 승인 담당자 (1명)
6. 허가건축과 건축1팀·건축2팀·농지산림팀·개발행위팀 인허가 담당자
7. 축산과 가축방역팀 가축방역 팀장 및 담당자
8.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팀·감염병대응팀 감염병 업무 팀장 및 담당자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5점

④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하며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실적가산점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주관 시책평가 수상자 : 최대 0.5점
2. 정부 포상 공무원 : 최대 1점
3. 모범공무원 : 최대 0.5점
4. 적극·협업행정 우수공무원 : 최대 0.5점
5.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 최대 0.8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연구관·지도관) : 최근 3년
2. 6·7급(연구·지도사) : 최근 2년
3. 8급 이하 : 최근 1년

제36조를 삭제한다.

별표 7의 2를 삭제하고, 별표 2,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별표11,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p>
<p>제2조(적용범위) (생략)</p>	<p>제2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p>
<p>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u>수습근무</u> 기간 종료 후의 임용</p> <p>4. ~ 9. (생략)</p>	<p>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u>수습근무</u> ----- -----</p> <p>4. ~ 9. (현행과 같음)</p>
<p>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제7조(응시수수료) ① ----- ----- ----- -----</p>

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8.25.)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② (생략)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

1. 5급 이상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원대상자-----
-----.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생략)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⑤ (생략)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 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 기
간 동안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부터 제4항
까지-----
-----.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

----- 최종시
험예정일부터 -----.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② (현행과 같음)

④ -----
- 4할 이상 -----
-----.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경

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⑩ (생략)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생략)

② (생략)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

⑨·⑩ (현행과 같음)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 임용일로부터 -----
----- 별지 제6호서식-----

-----.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3호서식-----
--.

제26조의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 (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

-----.

1. -----

-- (5급 이상) -----

2. -----

(7급 이상) -----

--

② -----

----- 각 호 -----.

1. (생략)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34조(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① (생략)

②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수당 지급 등 재정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1)(후단 신설 2019.7.15.) (조문이동 2019.7.15.)

제35조(자격증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08.12.15. 개정 2013.4.15. 2016.12.1. 2019.7.15.)

1. (현행과 같음)

2. -----
- 지도사

제34조(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해서 -----

제35조(자격증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하 “평정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훈련 파견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점

2.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점

<신 설>

<신 설>

1.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자 : 1개월 마다 0.05점 (최대 1.2점)

2.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파견자 : 1개월 마다 0.025점(최대0.6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의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최초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3점을 부여하되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다른 직위에 임용되어 가산점을 받는 경우 1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재난 대응팀 재난 팀장 및 담당자

2.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기초 생활 및 자활근로 담당자 (2명)

3.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장사 담당자 (1명)

4. 여성가족과 보육팀 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담당자 (2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16과 같다.

<신 설>

5. 경제과 산업단지팀 개별공장 승인 담당자 (1명)

6. 허가건축과 건축1팀·건축2팀·농지산림팀·개발행위팀 인허가 담당자

7. 축산과 가축방역팀 가축방역 팀장 및 담당자

8.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팀·감염병대응팀 감염병 업무 팀장 및 담당자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15점

④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하며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실적가산점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주관 시책평가
수상자 : 최대 0.5점

2. 정부 포상 공무원 : 최대 1점

3. 모범공무원 : 최대 0.5점

4. 적극·협업행정 우수공무원 :
최대 0.5점

5.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 최대
0.8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연구관·지도관) : 최근 3
년

2. 6·7급(연구·지도사) : 최근

<신 설>

<신 설>

제36조(실적가산점)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의2에 따라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실적가산점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실적심사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실적가점 부여 기준·부여방법 등 실적가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7.15.)

2년

3. 8급 이하 : 최근 1년

<삭 제>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5항·제6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잡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조경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6.12.1.,2020. 8.2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5의 2] (개정 2018.4.12.,2020. 8.25.)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술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전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자기기</p> <p>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 술 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p> <p>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화훼장식</p> <p>기능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p> <p>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생명유전	<p>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p> <p>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녹 지	조 경	<p>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p> <p>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산림, 조경</p>
	산림자원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산림보호	<p>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p> <p>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p> <p>기능사 : 산림</p>
	산림이용	<p>기 술 사 : 산림</p> <p>기 사 : 산림,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p>
해양수산	일반해양	<p>기술사: 해양, 수질관리</p> <p>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p> <p>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잠수</p>
	일반수산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p>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산업기사 :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 의사(2)				
	치 무		치과 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대 기		위생사(12)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개정 2016.12.1., 2020. 8.2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학	기술사(화학,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학, 식품, 화학분석)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류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평생교육사 1급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개정 2016.12.1., 2020. 8.2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 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3.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학	기술사(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학류제조, 화학,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학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	가스	기술사(화학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학,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학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학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학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보건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 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 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 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 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 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 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 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 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 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3] (개정2013.12.10.)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제14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7의4] (개정 2016.12.1., 2020. 8.2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의3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p> <p>개별비용 적용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지(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p> <p>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p> <p>농산물품질관리사</p>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축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p> <p>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녹지	산림자원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산림보호	<p>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p> <p>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p> <p>기능사 : 산림</p>	
	산림이용	<p>기술사 : 산림</p> <p>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p>	
	조경	<p>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p> <p>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p> <p>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p> <p>기능사 : 조경, 산림</p>	

해양수산	일반해양	<p>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p> <p>기능사 : 잠수</p>	
	일반수산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p>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p>	<p>기능사 자격증</p> <p>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p>
	어 로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해양교통 시 설	<p>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p> <p>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p>	
보 건	보 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p> <p>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사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보 건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간 호사, 위생사, 응급 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 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 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가 산비율 적용:간호 사, 조산사, 응급 구조사2급, 의지 보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설비관리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설비관리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3급</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 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시설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촌지도	농업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근층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평생교 육사 2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청소년 지도사 1급, 평생교 육사 2급
농촌지도	농촌사회	-	

농업연구	농 공	<p>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녹지연구	임 업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수의연구	수 의	<p>기 술 사 : 축산</p> <p>기 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p>기 술 사 : 축산</p> <p>기 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어촌지도	어 촌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약사, 한의 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의사, 한의 사, 치과의사, 수의 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특수, 일반), 방 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임상 병리사, 보건의료정 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 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 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 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의사, 약 사, 수의사, 환경측 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위생 사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재난 관리	기사 : 방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5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잡업, 잡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전 기		기 계 운 전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경 영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생 활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촌 사 회 농 촌 생 활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촌 지 도	축 산
	농 공	공 업 설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녹지연구	임 업 경	임 업
농 촌 지 도			임 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경	수 질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공 중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보 건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건 축		농 업 토 목 건 축
방재안전연구	안 전 관 리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재 난 관 리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조 경
	잠 업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총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21.)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우)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우)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우)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공주시 행정지원과장 최 인 종 (☎ 840-2060)

【 관계 법령 및 표준안 발췌문 】

법령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개정 2020. 9. 10.>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 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삭제 <2020. 9. 10.>

⑥ 삭제 <2020. 9. 10.>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0.>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 <2020. 9. 10.>

③ 삭제 <2020. 9. 10.>

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

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0.>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⑤ 삭제 <2020. 9. 10.>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10.>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5. 10., 2020. 9. 10.>

제25조 삭제 <2007. 12. 17.>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10.>

② 삭제 <2020. 9. 10.>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1992. 4.13 전문개정
지기 01100 - 289]

- 1992. 6. 1.지기 01100-422 개정
- 1992.12.19.지공 01100- 26 개정
- 1993. 6.21.지공 01100-199 개정
- 1994. 1.10.지공 01100- 8 개정
- 1994.12.19.지공 12101-465 개정
- 1995. 3.22.지공 12101-100 개정
- 1995. 7. 4.지공 12101-241 개정
- 1995.12.28.지공 12101-497 개정
- 1996. 3.26.지공 12101-157 개정
- 1996.11.18.지공 12101-534 개정
- 1996.12.26.지공 12101-578 개정
- 1998. 2.20.지공 12101- 64 개정
- 1998. 9.21.운영 12100-457 개정
- 1999. 4.16.운영 12100-297 개정
- 1999. 7. 1.운영 12100-511 개정
- 1999.12. 3.운영 12100-170 개정
- 2004.10.13.분지-2721 개정
- 2005. 3. 2.분지-814 개정
- 2006. 2.15.지방공무원제도탐-69 개정
- 2007. 5.23.지방인사여성제도탐-119 개정
- 2008. 3.14.지방공무원과-3 개정
- 2008. 5.22.지방공무원과-94 개정
- 2008.10.16.지방공무원과-1343 개정
- 2008.10.20.지방공무원과-1380 개정
- 2009. 3. 6.지방공무원과-647 개정
- 2009. 5.22.지방공무원과-1489 개정
- 2009.10.15.지방공무원과-3131 개정
- 2010.12.13.지방공무원과-3972 개정
- 2011.12. 8.지방공무원과-4072 개정
- 2012. 1.31.지방공무원과-311 개정
- 2012.11.13.지방공무원과-4260 개정
- 2013. 5. 9.지방공무원과-753 개정
- 2013.12.10.지방공무원과-3936 개정
- 2014. 1. 7.지방공무원과-40 개정
- 2014. 1.17.지방공무원과-234 개정
- 2014. 2. 3.지방공무원과-455 개정
- 2014. 3.15.지방공무원과-1081 개정
- 2014. 3.26.지방공무원과-1213 개정
- 2014. 4.30.지방공무원과-1626 개정
- 2015.12.21.지방인사제도과-5692 개정
- 2016.12.30.지방인사제도과-6102 개정
- 2017. 5.19.지방인사제도과-2336 개정
- 2018. 1.10.지방인사제도과-247 개정
- 2018. 4.12.지방인사제도과-1510 개정
- 2018.12.21.지방인사제도과-5229 개정
- 2019. 8. 6.지방인사제도과-3670 개정
- 2020. 9.22.지방인사제도과-491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3., 2006.2.15., 2013.12.1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 제>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10.13.>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총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3.12.10., 2015.12.21., 2016.12.30., 2018.4.12., 2018.12.21.>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3.]

제2장 시험

제4조 삭제 <1995.7.4.>

제5조 삭제 <2013.12.10.>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 2018.12.2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5.3.2.>
<개정 2013.12.10., 2018.12.21.>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단서신설 2004.10.1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5.7.4., 2013.12.1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09.10.15., 2013.12.10., 2016.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6.12.30. **개정 2020.9.22.**>

제7조 (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1996.3.26.> <개정 2004.10.13., 2011.12.8.>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2.20.>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1999.12.3.]<개정 2004.10.13., 2008.10.16., 2013.12.10.>

제9조 삭제<2010.12.13. >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12.13. >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5.12.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8.> <신설 1995.7.4.> <개정 2011.12.8.>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4., 1995.12.28.>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2.20., 1999.4.16., 2011.12.8.>

제12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4., 2011.12.8., 2015.12.21., 2016.12.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2.11.13., 2013.5.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11.13., 2013.5.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1.>

제 12 조의2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0.13.]

제 13 조 (면접시험기준) 삭제 <2014.1.1.>

제13조의2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3.12.10.> <개정 2014.3.15.>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7.4.] <단서 신설 2004.10.13.> <개정 2011.12.8., 2015.12.21.>

제13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19.8.6.>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 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12.8., 2013.12.10.> <단서 신설 2013.12.10.>

③ 삭제<2019.8.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1999.4.16., 2019.8.6.>

제 14 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4.12.19., 2009.10.15., 2011.12.8., 2013.12.1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3.26., 2011.12.8.>

③ 삭제 <1994.12.19.>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3.26., 1998.9.21., 1999.12.3., 2006.2.15., 2010.12.13., 2011.12.8., 2013.12.1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서삭제 2013.12.1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13.12.10.>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2.20., 2010.12.13., 2011.12.8. 개정 2020.9.22.>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8.>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4.10.13., 2006.2.15., 2011.12.8.>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10.] <개정 2014.3.15., 2016.12.30.>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 15 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4.12.>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4.16.> <개정 2011.12.8.>

③ 삭제<2018.1.10.>

제 15 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2.11.13., 2013.12.1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3.12.10., 2014.3.15.>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4.3.15.>

② 삭제 <2013.12.10.>

제 16 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7.4., 2011.12.8.>

제 17 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12.13.>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4.12.19., 2010.12.1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0.12.13.>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0.12.13.>

⑤ <삭제 2018.4.12.>

⑥ <삭제 2018.4.12.>

제 3 장 임 용

제 18 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7.4.> <개정 2014.3.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제 19 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 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 20 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제 21 조 삭제 <1992.12.19.>

제 22 조 삭제 <1995.7.4.>

제 22 조의2 삭제 <1999.7.1.>

제 23 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7.4., 1996.3.26., 1999.12.3., 201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8.6.>

제 24 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23.> <단서삭제 2013.12.10.>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지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지사, 징병전담지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5.3.2., 2006.2.15., 2007.5.23., 2013.12.10., 2015.12.21., 2017.5.19.>

제 24 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개정 2020.9.22.>

[본조신설 2019.8.6.]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1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1998.2.20.]<개정 2008.5.22., 2009.5.22., 2015.12.21.>

제 25조의2 삭제 <2017.5.19.>

제 26 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7.4., 2013.12.10.>

제 26 조의2 (시(*군·구) 및 동(*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군·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동(*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1.18.>

②시(*군·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26조의4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 22.]

제 27 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7.4.>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7.1.>

제 27 조의2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 (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5.7.4., 1999.7.1., 1999.12.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3.12.10.>
3. 삭제 <2009.10.15.>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2.10.>
2. 삭제 <1999.7.1.>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1999.7.1.>

제28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1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3.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0.>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5.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7.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3.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개정 1996.11.18.>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2.20.>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 3, 별표 7의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4.16.>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7.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9.12.3.>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4.10.13.>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5.3.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2.1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7.5.23.>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8.3.17.>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8.5.2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8.10.16.>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0.>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2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1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1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시행일) 제24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6640호) 제33조제9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예규 제75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338-4 전	대전051	NJ52-13-20-051	준보전산지

나.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730-2묘	공주037	NJ52-13-19-03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62-6전	공주039	NJ52-13-19-03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297-4대	전의061	NJ52-13-12-06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34-11목	공주014	NJ52-13-19-01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34-12목	공주014	NJ52-13-19-01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730-10목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730-11도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730-9목	예산050	NJ52-13-11-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368-6잡	예산088	NJ52-13-11-08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16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16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17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18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18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19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19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20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20잡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2도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6도	예산070	NJ52-13-11-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26-14도	예산080	NJ52-13-11-08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10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12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15잡	공주032 공주033	NJ52-13-19-032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18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0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2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6잡	공주032 공주033	NJ52-13-19-032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8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3잡	공주032 공주033	NJ52-13-19-032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4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7잡	공주033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95-1잡	공주032 공주033	NJ52-13-19-032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95-3잡	공주032 공주033	NJ52-13-19-032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500-2잡	공주032 공주033	NJ52-13-19-032 NJ52-13-19-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676-1임	공주054	NJ52-13-19-05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678-4잡	공주054	NJ52-13-19-05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525-2묘	전의045	NJ52-13-12-04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49-4잡	전의046	NJ52-13-12-046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 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공주시청 산림경영과(☎041-840-841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205 외 3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2020
1201

2020 120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사일자	도 로 명 주 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고사일	도로명부여사유	공 적 장 부 주 소 전 환 계 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 60-3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205	2020 1215	신 규	20090 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 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 794-5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787 (오곡 동)	2020 1215	신 규	20100 112	발양 ~ 반송을 지나는 길의 고개 이름을 활용	
3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38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99-9 (금흥동)	2020 1215	신 규	20100 202	지역특성 반영	
4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332, 330-1, 330-2, 330-3, 332-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87 (반죽동)	2020 1215	신 규	20100 202	행정구역 명칭 반영	
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35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96	2020 1215	신 규	20100 112	오룡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송선군묘가 있어 송선군로라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65-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21	2020 1215	신 규	20100 112	인근에 영규대사묘가 있어 영규대사로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236-27	2020 1215	신 규	20100 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1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236-103	2020 1215	신 규	20100 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206-3, 206-2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단평길 15	2020 1215	신 규	20100 112	조선시대 초엽에 단평역이 사곡면 고당리에 있다가 그 후에 이곳으로 옮겨 왔다 하여 단평길로 부여후 다른 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448-1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대낮뜰길 21-12	2020 1215	신 규	20100 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448-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대낮뜰길 21-14	2020 1215	신규	201001 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272-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대성길 67-6	2020 1215	신규	201002 02	대성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대성길로 부여	
1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영정리 52-5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마새길 17-55	2020 1215	신규	201001 12	마을이 골짜기에 있어서 옛날에 여기를 오르다 보면 말도 숨이 차서 꼭 물을 마시고 쉬게 하였다는 마을이어서 마수라고 부르던 것이 마새로 변했다 하여 마새길로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88-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매당길 30	2020 1215	신규	201001 12	마을에 매화낙지형의 명당이 있다 하여 매당길로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곡리 89-1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화당길 44	2020 1215	신규	201001 12	선비들이 모여서 글을 읽는 강당이 있다하여 문화당길로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41-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길 63-24	2020 1215	신규	201001 12	보물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 구역 명칭을 활용	
1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산 5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2길 56	2020 1215	신규	201001 12	보흥2리를 들어오는 주 진입로로 행정 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보흥2길로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44-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산막골길 83	2020 1215	신규	201001 12	예전에 산막이 있었다 하여 산막골길로 부여	
1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17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정안동막길 58-58	2020 1215	신규	201001 12	상정안이란 마을과 동막골이란 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상정안동막길로 부여	
2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203-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섭밭말길 32	2020 1215	신규	201001 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 24-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섭밭말길 76	2020 1215	신 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2	충청남도 공주시 시목길 66 (신관동)	2020 1215	신 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23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330-13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96 (쌍신동)	2020 1215	신 규	2010 0112	쌍신동을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쌍신길로 부여	
2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54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68	2020 1215	신 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55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8-2	2020 1215	신 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551-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8-5	2020 1215	신 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7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111-1, 111-2	충청남도 공주시 왕촌길 473-15 (상왕동)	2020 1215	신 규	2010 0112	왕촌이라 불리던 하천을 타고 가는 길이 라 왕촌길이라 부여	
28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47-37	충청남도 공주시 왕촌안길 1 (상왕동)	2020 1215	신 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9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47-130	충청남도 공주시 왕촌안길 3 (상왕동)	2020 1215	신 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30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47-129	충청남도 공주시 왕촌안길 5 (상왕동)	2020 1215	신 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 장부 주소 전환 계획
3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154-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83-5	2020 1215	신 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과 지리적 위치 반영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3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94-16, 494-18, 495-3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3길 7	2020 1215	신 규	2010 0112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하여 정가터라 불린 후 어원이 변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3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99-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33-35	2020 1215	신 규	2010 0202	정안면의 중심이 되었던 옛길로 중앙 자를 활용하여 정안중앙길로 부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202-58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사유	
1	우성면 내산리 444-1,444-2,444-6	우성면 내산리 444-2,444-6	우성면 무성산로 202-58	우성면 무성산로 202-58	12.7	건물번호분할 변경신청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우성면 내산리 444-1,444-2,444-6	우성면 내산리 444-1	우성면 무성산로 202-58	우성면 무성산로 202-56	12.7	건물번호분할 변경신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17-5 외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일	폐지사유
1	공주시 금성동 181-7	공주시 백미고을길 17-5	12.15	허가과68602-(2020.11.26.)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2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237	공주시 반포면 온천사기소길 12-6	12.15	허가과68602-(2020.11.26.)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3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309-2	공주시 계룡면 밤나무쟁이길 42	12.15	허가과68602-(2020.11.26.)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4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605-2	공주시 심방울1길 43-6	12.15	허가과68684-(2020.11.26.)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5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286-13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8	12.15	허가과68684-(2020.11.26.)호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거 건물번호 폐지

금학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금학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모				관리자	해제 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m ³)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금학	금학동 112-3번지 일원	100	87.5	11.2	2.6	공주시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휴양사업소 휴양마을팀 041-840-2574)

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곡면 계실리 580-4번지 일원에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R&D 필드테스트장 등 구축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에 대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0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문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324,791.9	증) 58,916.0	1,383,707.9	100.0	
관리지역	소 계	1,324,791.9	증) 58,916.0	1,383,707.9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증) 58,916.0	58,916.0	4.3	
	계획관리지역	1,324,791.9	-	1,324,791.9	95.7	

주) 금회 변경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27	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624번지 일원	1,324,791.9	증) 58,916.0	1,383,707.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 계획구역	○ 면적 변경 - 1,324,791.9㎡ → 1,383,707.9㎡ 증) 58,916.0㎡	○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R&D필드테스트장 등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확장)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가.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324,791.9	증) 58,916.0	1,324,791.9	100.0	
공공시설용지	834,883.9	증) 58,916.0	834,883.9	64.6	
시설용지	782,128.2	증) 58,916.0	782,128.2	60.8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419,650.8	-	419,650.8	30.3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139,484.4	-	139,484.4	1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222,993.0	-	222,993.0	16.1	
국립소방연구원	-	증) 58,916.0	58,916.0	4.3	
도로용지	52,755.7	-	52,755.7	3.8	법면 포함
녹지용지	489,908.0	-	489,908.0	35.4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15~20	집산 도로	1,107	중로1-5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2) 공간시설

가)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계실리 산8-1 일원	489,908.0	-	489,908.0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소방방재 교육연구 단지	공공 청사	계실리 624	419,650.8	-	419,650.8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기정	8	국가정보 자원 관리원 공주센터	공공 청사	계실리 10 일원	222,993.0	-	222,993.0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신설	9	국립소방연구원	공공 청사	계실리 580-4 일원	-	증) 58,916	58,916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9	국립소방연구원	○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계실리 580-4 일원 - 면적 : 58,916㎡	○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R&D필드테스트장 등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신설

나) 연구시설

(1)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연구 시설	계실리 36-1 일원	140,000	감) 515.6	139,484.4	충남고시 제2012-332호 (12.10.02)	계획관리 지역

(2)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 시설명 및 면적 변경 - 시설명 :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 면적 : 140,000m ² → 139,484.4m ² 감) 515.6m ²	○ 기결정고시(공주시 고시 제2020-56호, 20.4.16)시 누락된 고시사항 반영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BL1	419,650.8	419,650.8	-	계실리 624	419,650.8	-	419,650.8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기정	-	BL2	139,484.4	139,484.4	-	계실리 36-1 일원	139,484.4	-	139,484.4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기정	-	BL3	222,993.0	222,993.0	-	계실리 10 일원	222,993.0	-	222,993.0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기정	-	BL4	489,908.0	489,908.0	-	계실리 산8-1 일원	489,908.0	-	489,908.0	경관녹지
신설	-	BL5	-	58,916.0	-	계실리 580-4 일원	-	증) 58,916.0	58,916.0	국립소방연구원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용 도	지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15층	
-	BL2 한국국토 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용 도	지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4층	
-	BL3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용 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과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5층	

<변 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용 도	지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15층 이하	
-	BL2 한국국토 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용 도	지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4층 이하	
-	BL3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용 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과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5층 이하	
-	BL5 국립소방 연구원	용 도	지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층 수	5층 이하	